

청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가단3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박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호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207,692원 및 그 중 75,004,082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 201,203,6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권리 변동 내역

○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지번으로 표시한다)1) 를 대금 합계 610,000,000원에 매수2) 하고,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아래 담보대출을 피고 명의로 받기 위함),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또는 원고피고 공유 명의로 마쳤다.

토지 (상주시 C리)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명의자
D 전 638m'	2016. 3. 2.	2015. 1. 7. 매매	피고
E 전 1,408m'	2016. 3. 2.	2015. 1. 7. 매매	피고
F 도로 685m'	2016. 3. 2.	2015. 1. 7. 매매	피고
G 전 1,352m'	2016. 3. 2.	2015. 1. 7. 매매	피고
H 전 1,005m'	2016. 3. 2.	2015. 1. 7. 매매	피고
I 전 74m'	2016. 3. 2.	2015. 1. 7. 매매	피고
J 임야 11,751m'	2016. 3. 2.	2016. 3. 2. 매매	원고, 피고 공유(각 1/2)
K 임야 7,030m'	2016. 3. 2.	2016. 3. 2. 매매	원고, 피고 공유(각 1/2)
L 임야 582m'	2016. 3. 2.	2016. 3. 2. 매매	원고, 피고 공유(각 1/2)
M 임야 979m'	2016. 3. 2.	2016. 3. 2. 매매	원고, 피고 공유(각 1/2)
N 임야 6,151m'	2016. 3. 2.	2016. 3. 2. 매매	원고, 피고 공유(각 1/2)
O 임야 1,030m'	2016. 3. 2.	2016. 3. 2. 매매	원고, 피고 공유(각 1/2)

○ 원고는 2016. 3. 2. P조합(이하 ‘P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의 명의로 3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피고는 P조합에게 각 토지(공동담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뜻에 따라 2016. 4월부터 2017. 6월까지 S 등 19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J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도인	매수인	지분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원고	S, T, U, V, W, Y	각 662/11,751지분	2016. 4. 14.	2016. 4. 14. 매매
	Z, AA	각 331/11,751지분		
피고	AB, AC, AD, AE, AF, AG	각 662/11,751지분	2016. 6. 7.	2016. 6. 2. 매매
	AH, AI	각 529/11,751지분		
피고	AJ	662/11,751지분	2016. 7. 11.	2016. 7. 8. 매매
원고	AK	662/11,751지분		
피고	AL	367/23,502지분	2017. 6. 23.	2017. 6. 12. 매매
원고		956/23,502지분		

AB 지분은 2017. 2. 14. AN에게 이전되었고,

AK 지분은 2017. 2. 14. AO에게 이전되었다가, 2017. 5. 26. AP에게 이전되었음

○ 원고는 L 토지 지상에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2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창고시설, 보일러실)’을 신축하고(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 2017. 4. 4.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의 뜻에 따라 2017. 11. 22. P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6,000,000원, 채무자 피고, 공동담보 각 토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매절차 및 배당

○ 각 토지 및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조합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AQ, AR(중복)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AS이 2021. 10. 8. 각 토지 및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 위 경매법원은 2021. 11. 23.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배당할 금액을 996,202,887원으로 정하고, 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원)
1	상주시	교부권자(A 당해세)	54,990
1	상주시	교부권자(B 당해세)	173,270
2	P조합	신청채권자(근저당권)	429,748,025
3	경주시	교부권자(A 채납)	21,930,570
4	경주세무서	교부권자(A 채납)	153,746,112
4	동울산세무서	교부권자(A 채납)	22,114,221
5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교부권자(AT 미납분)	294,300
5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교부권자(Y 미납분)	4,024,980
5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교부권자(AI 미납분)	64,240
6	AC, AE, S, AP V, AD, AN, W AL, U, AJ, AG T, AF	각 소유자	각 14,444,942
6	피고	채무자 겸 소유자	113,009,277
6	AH	소유자	11,854,814
6	Y	소유자	10,419,962
6	AI	소유자	11,790,574
6	AM	소유자	7,471,522
6	AT(개명전 Z)	소유자	7,276,842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가단2065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 진행 도중 피고로부터 각 토지 내지 각 토지 지분 및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피고 명의의 각 토지 내지 토지 지분 및 위 건물에 관한 잉여금이 피고에게 전부 배당되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2. 2. 15. “원고는 그 주장 자체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 각하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배당금의 처리 내역

○ J 토지 중 피고 명의 지분의 일부를 매수, 취득하였던 AE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6365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AE은 ‘지분 매수 후 P조합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지분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 및 등기비용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21. 4. 6. “피고는 AE으로부터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AE에게 31,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AE은 이후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2021타채66830호로 피고를 채무자,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현금출납공무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4,515,879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21. 11. 25. 신청 내용대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제3채무자로부터 피고의 배당금 중 34,515,879원을 추심하였다.

○ J 토지 중 피고 명의 지분의 일부를 매수, 취득하였던 AL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78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AL은 ‘지분 매수 후 P조합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0. 6. “A3) 이 2020. 12. 31.까지 J 토지에 관한 P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경매신청을 취하지키지 못할 경우, AL과 피고 사이의 지분매매계약은 해제되고, AL은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A과 공동하여 AL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AL은 이후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2021타채67288호로 피고를 채무자,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현금출납공무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2,375,2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21. 12. 8. 신청 내용대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제3채무자로부터 피고의 배당금 중 32,375,200원을 추심하였다.

○ 피고는 2021.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AE, AL이 추심한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및 이자로 46,121,753원(= 113,009,277원 - 34,515,879원 - 32,375,200원 + 이자액)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1. 12월 초순 국세청으로부터 각 토지 내지 각 토지 지분과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46,222,160원의 납부고지를 받았고, 2021. 12. 13.

위와 같이 수령한 배당금 등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8, 9, 16, 17호증, 을 제1 내지 4, 9, 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금 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각 토지 매수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5. 17.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각 토지를 원고 소유로 하고, J 토지 등을 분할하여 매각하고, 2필지는 주택 및 상가를 형성하여 매각하고, 이익금은 5:5로 분배하고, 어떤 이유로든 같이 일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지분을 조건 없이 마무리하고 물러난다’는 것이었다. 그 취지는 피고의 지분이 처분되거나 경매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고, 처분대금이나 경매 배당금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21. 11. 22.(배당기일 전날) 원고가 찾아가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원고가 찾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AE, AL에 대한 각 채무와 양도소득세를 정산한 후 잔액이 있으면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구두약정을 했다.

이와 같이 피고는 2016. 5. 17.자 약정서 및 2022. 11. 22. 구두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AE, AL에 대한 각 채무액과 양도소득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배당금에서 공제될 액수는 아래와 같다.

* AE이 압류추심해 간 34,515,879원 중 20,072,937원 4) : 피고는 AE이 소유자로서 이미 잉여금 14,444,942원을 배당받고서 또 피고의 배당금에서 동액을 중복하여 추심해 가는 것에 대해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저지해야 할, 원고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AE이 중복 수령한 14,444,942원은 피고가 책임져야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배당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AL이 압류추심해 간 32,375,200원 중 17,932,258원 5) : 피고는 AL이 소유자로서 이미 잉여금 14,444,942원을 배당받고서 또 피고의 배당금에서 동액을 중복하여 추심해 가는 것에 대해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저지해야 할, 원고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AL이 중복

수령한 14,444,942원은 피고가 책임져야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배당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양도소득세 0원 : 각 토지 매입비용, 위 건물 신축 비용, 기타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피고가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원고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피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배당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의 공제될 액수를 뺀 나머지 배당금 75,004,082원(= 113,009,277원 - 20,072,937원 - 17,932,258원 - 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사실관계

갑 제15호증, 을 제5 내지 8,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와 피고는 2016. 5. 17.(각 토지의 매수취득 후 2개월 후의 시점임) 별지1. 기재 내용의 약정서(이하 ‘제1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21. 5. 18.(대출금 미변제로 P조합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AE, AL이 피고를 상대로 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의 시점임) 별지2. 기재 내용의 약정서(이하 ‘제2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제2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각 토지 내지 토지 지분, 위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다.

○ 원고는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판단

1) 원고의 배당금 반환 청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만일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피고의 배당금 전액이 AE, AL의 각 압류추심 및 양도소득세 납부로 소멸되어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협조의무’의 근거는 제1약정서의 ‘피고 명의로 등기된 모든 지분을 조건 없이 마무리하여 주고 조건 없이 물러난다’는 조항[2.의 (3)항]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문언의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원고에게 최대한 반환해 주기 위해 피고가 AE, AL 등의 압류추심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대항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토지와 위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AE, AL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각 집행권원을 갖게 된 후에 원피고가 체결한 제2약정서에서 그 사태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그 내용은 ‘피고는 각 토지 내지 토지 지분, 위 건물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AE, AL에 대한 각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는 것이고, 피고는 그 이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원고가 스스로 잉여금의 배당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다가 막상 잉여금이 피고에게 배당되자, 제2약정서에서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양도소득세, AE, AL에 대한 각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탓하며 피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제2약정서(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및 AE, AL에 대한 각 채무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처리방안을 정한 합의이다)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이후 원고의 책임 하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피고에게 어떤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잉여금의 배당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야말로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AE, AL에 대한 각 채무에 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여금 청구

원고가 2016년경 피고가 청주시 청원구 AU 소재 주택을 매입할 때 피고에게 그 매입자금으로

9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원고가 위 대여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면제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6. 피고에게 “본인은 2017. 5. 6. 피고에게 선이익금6) 으로 지급한 돈(AU 주택 구입)을 경주, 상주에서 일한 수고비로 지급하기에 확인서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다시 2021. 5. 18. 제2약정서에도 “원고가 AU 주택을 매입하면서 피고에게 차용해 준 1억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7)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면제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다시, 2017. 5. 6.자 확인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죽인다’는 등 폭언을 하고,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며 작성하라 요구하기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8) 이고, 2021. 5. 18.의 제2약정서는 ‘피고가 각 토지 내지 토지 지분,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항변한다.

이에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폭행, 폭언,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2017. 5. 6.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9, 20,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21. 5. 18.의 제2약정서 중 대여금 채권 면제 부분의 내용이 ‘피고의 각 토지 내지 토지 지분,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도 제2약정서의 문언상으로는 의문스럽지만 일단 그 의문을 차치하고 이를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잉여금의 배당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조건은 피고의 이행제공으로써 이미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청구

가. 쌍방의 주장 요지

1) 원고 : 각 토지 매입비용과 위 건물 신축비용 등을 합하면 약 13억 원에 이르는바 이를 모두 원고가 지출하였는데, 피고의 명의로 위 건물 신축공사와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공사비 등 필요경비 영수증은 피고 명의로 발급되었다. 원고는 J 토지 중 원고 지분을 S 등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공사비 등 필요경비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J 토지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로 108,203,610원이 부과되어(교부권자 경주세무서에 배당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한다.

2) 피고 : 각 토지의 매수, 지분 매도와 위 건물 신축공사 등은 모두 원고가 주관하였고, 그에 관한 모든 자료는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공사비 등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교부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 신축공사, 도로개설공사는 모두 피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지출하였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을 제37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나아가 그 비용 지출에 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이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2,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필요경비 관련 서류 교부를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요청하였으나, 당시 문자메시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 원고가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2023. 12. 8.자 준비서면 6쪽)하여, 증거가 없음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별지

되었는바, 본문의 표에는 편의상 최종 분할 후의 현재의 12필지로 표시하였다.* E 토지에서 2016. 11. 15.에 F, G의 각 토지가 분필되었다.* H 토지에서 2016. 4. 11.에 I 토지가 분필되었다.* J 토지에서 2016. 4. 11.에 K, L, M의 각 토지가 분필되고, L 토지에서 2017. 4. 6.에 N, O의 각 토지가 분필되었다.

2) D, E, H 토지는 Q로부터, J 토지는 주식회사 R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3) 이 사건의 원고이다.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였다.

4) 주장 내용대로 계산하면 20,070,937원(= 34,515,879원 - 14,444,942원)이 되는데, 원고의 오산(誤算)으로 보인다.

5) 주장 내용대로 계산하면 17,930,258원(= 32,375,200원 - 14,444,942원)이 되는데, 원고의 오산(誤算)으로 보인다.

6) 제1약정서 중 2.의 (4)항 참조

7) 제2약정서에 기재된 문언인바, 이는 맥락상 “원고는 피고가 AU 주택을 매입할 때 피고에게 대여해 준 1억 원에대하여 권리를 주장(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

8) 원고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으로 선행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